

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운영되었으나, 융자실적 저조,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사업을 폐지하고, 기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고

상환중인 융자금 및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「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」의 폐지와 동시에 그 소관 자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환중인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과 회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 이 경우 상환된 자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관 실·과		새 마을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수 원
	담 당	박 경 하
	담 당 자	신 금 선 (480-6803)